

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4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8월 30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재활용 장비구니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폐현수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재활용 장비구니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폐현수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제시될 수 있도록 “폐현수막”을 “재활용가능자원”으로 수정함(안 제10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3항 중 “폐현수막”을 “재활용가능자원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폐기물관리법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 ----- -----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「폐기물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<u>의하여</u>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  1. ~ 5. (생략)  ② (생략) 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<u>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----- - <u>법 제5조제1항에 따른</u> - ----- -----.	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(개정안과 같음)     1. ~ 5. (개정안과 같음)  ② (개정안과 같음)  ③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폐기물의 광역관리) ① (생략)  ② <u>2이상의</u>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59조의 규정에 의한</u> 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폐기물의 광역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u>2 이상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59조에 따른</u> ----- -----.	제3조(폐기물의 광역관리) ① (개정안과 같음)  ② 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 ① <b>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</b> 시가 반입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 ① <b>법 제6조에 따라</b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<b>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b>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제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----- <b>법 제14조제2항에 따라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구청장은 <b>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</b>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(이하 “종량제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----- <b>법 제14조제5항에 따라</b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탄재·재활용 가능품·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<u>사업장일반폐기물</u> 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 <u>제3호가목(2)의</u>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 <u>사업장일반폐기물</u> 중 ----- ---- <u>제3호가목(2)의</u> - -----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<u>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<u>연1회</u>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<u>법 제39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연 1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한다</u></p>	<p>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한다.</u></p>	<p>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시민참여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0조(시민참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시민참여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2조(폐기물통계조사)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,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<u>시행령</u> 별표 8과 같으며,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,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폐기물통계조사) --- ----- ----- 등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--- ----- ----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,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폐기물통계조사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폐기물관리법」 같은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」, 같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이상의”을 “2 이상의”으로, “제15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59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4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사업장일반폐기물중”을 “사업장일반 폐기물 중”으로, “제3호 가목(2)의”을 “제3호가목(2)의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39조에 따라”로, “연1회”를 “연 1회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정한다”를 “정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,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등,”을 “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령”을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, <u>같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<u>의하여</u>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 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 장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<u>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법 제5조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폐기물의 광역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<u>2이상의</u>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 설을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법」 <u>제159조의 규정에 의한</u> 조합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폐기물의 광역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2 이상의</u> ----- ----- ----- <u>제159조에 따른</u> -- -----.</p>
<p>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 ① <u>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시가 반입수 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</p>	<p>제4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) ① <u>법 제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구청장은 <b>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b>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제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구청장은 <b>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</b>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(이하 “종량제”라 한다)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연탄재·재활용가 능품·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<b>사업장일반폐기물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 제3호가목 (2)의</b>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</p> <p>③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 ----- <b>법 제14조제2항에 따라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) ① ---- ----- <b>법 제14조제5항에 따라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b>사업장일반폐기물 중</b> -- ----- <b>제3호가목</b> <b>(2)의</b>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<b>별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</b>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<b>연1회</b>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8조(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·감독) <b>별 제39조에 따라</b> ----- ----- <b>연 1회</b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b>정한다</b></p>	<p>제9조(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b>정한다.</b></p>
<p>제10조(시민참여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0조(시민참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b>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,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.</b></p>
<p>제12조(폐기물통계조사)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,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폐기물통계조사) ----- ----- 등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<b>시행령 별표 8과</b> 같으며,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13조(과태료 부과 등) ----- ----- 「<b>폐기물관리법 시행령</b>」 ----- -----.</p>